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좌동 (신설) 9. <u>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</u>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6. 생략 ③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6. 좌동 (신설) 7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③ 좌동
	*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1. ~ 13. 생략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1. ~ 13. 좌동 (신설) 14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지수 일 수익률의 역(-)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 인덱스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. ~ 마. 생략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. ~ 마. 생략 (신설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 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 ※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u>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 나. ~ 다. 생략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, <u>고난도 금융투자상품</u> 나. ~ 다. 좌동

	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지수 일 수익률의 역(-)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 인덱스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 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</p> <p>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3) 생략</p>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</p> <p>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<u>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u> <u>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u> <u>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u> <u>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</u> <u>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</u> (4) 좌동</p>
<p>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</p>		

-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9. 생략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9. 좌동 (신설) 10.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</p>
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</p>

	<p>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③생략</p> 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<p>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6. 작동</p> <p>(신설) 7.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p> <p>③작동</p>
투자설명서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16. 생략</p>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16. 작동</p> <p>(신설) 17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양(陽)의 1.5배 내외로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
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(신설)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0(해당)</u></p> <p>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</p> <p>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간접형)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, 종류형</p> <p>나. ~ 다. 생략</p>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간접형)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</p> <p>나. ~ 다. 작동</p>
	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양(陽)의 1.5배 내외로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 <p>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</p> <p>(1) ~ (2) 생략</p> <p>(3) 생략</p>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</p> <p>(1) ~ (2) 생략</p> <p>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</p>

		<p>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</p> <p>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p> <p>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</p> <p>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</p> <p>(4) 작동</p>
<p>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</p>		

- KB스타 코리아 레버리지1.5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7. 생략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7. 작동</p> <p>(신설) 8.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</p>
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작동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5. 작동</p> <p>(신설) 6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	
투자설명서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15. 생략</p>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15. 작동</p> <p>(신설) 16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1.5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
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(신설)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0(해당)</u></p>

		<p>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 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 나. ~ 다. 생략</p>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나. ~ 다. 좌동</p>
	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1.5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 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3) 생략</p>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<u>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u> <u>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u> <u>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u> <u>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</u> <u>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</u> (4) 좌동</p>
<p>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</p>		

- KB스타 코리아 레버리지2.0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7. 생략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7. 좌동</p> <p>(신설) 8. “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</p>
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생략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(신설) 6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</p> <p>③좌동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투자설명서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15. 생략</p>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15. 좌동</p> <p>(신설) 16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2.0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
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(신설)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</u></p> <p>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</p> <p>※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u></p>
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</p> <p>나. ~ 다. 생략</p>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주식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</p> <p>나. ~ 다. 좌동</p>
	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2.0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</p>

		리지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 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3) 생략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 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 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 (4) 작동	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	

- KB 고배당 커버드콜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7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7. 작동 (신설) 8.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5. 생략 ③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작동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5. 작동 (신설) 6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③작동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	

<p>투자설명서</p>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1. ~ 14. 생략</p>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1. ~ 14. 좌동 (신설) 15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 지수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
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. ~ 마. 생략</p>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. ~ 마. 생략 (신설)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0(해당)</u> 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 ※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u></p>
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혼합주식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 나. ~ 다. 생략</p>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혼합주식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나. ~ 다. 좌동</p>
	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KOSPI200 지수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 ※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u></p>
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3) 생략</p>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 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</u> 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</p>

	<p>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p> <p>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</p> <p>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</p> <p>(4) 좌동</p>
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코리아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7. 생략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7. 좌동</p> <p>(신설) 8.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</p>
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생략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(신설) 6.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p> <p>③좌동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20. 생략</p>	<p>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</p> <p>1. ~ 20. 좌동</p> <p>(신설) 21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음(陰)의 2배수 내외로 연동되어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인버스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
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	<p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(신설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O(해당)</p> <p>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</p> <p>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

	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재간접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</p> <p>나. ~ 다. 생략</p>	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증권(재간접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</p> <p>나. ~ 다. 작동</p>
		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비교지수 일일등락률의 음(陰)의 2배수 내외로 연동되어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인버스 전략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</p> <p>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p>
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</p> <p>(1) ~ (2) 생략</p> <p>(3) 생략</p>	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 <p>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</p> <p>(1) ~ (2) 생략</p> <p>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</p> <p>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p> <p>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</p> <p>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</p> <p>(4) 작동</p>
	<p>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</p>	

- 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10. 생략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10. 작동</p>

		(신설) 11.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7. 생략 ③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7. 좌동 (신설) 8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③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1. ~ 13. 생략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1. ~ 13. 좌동 (신설) 14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으로, 원자재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
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. ~ 마. 생략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. ~ 마. 생략 (신설)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0(해당)</u> (1)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상품으로,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 ※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u>
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특별자산(상품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 전환형 나. ~ 다. 생략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투자신탁, 특별자산(상품-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 전환형,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나. ~ 다. 좌동
	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(문구추가) -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으로, 원자재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. ※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시행은 2021년 05월 10일부터로 합니다.</u>
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	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~ 마. 생략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 ~ (2) 생략

	<p>(3) 생략</p>	<p>(신설) (3)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</p> <p>1)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) 숙려기간 동안[청약일 또는 주문일(불포함)로부터 2영업일]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)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·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·주문을 집행합니다.</p> <p>4) 숙려기간 동안 주가 상승 등 시장상의 변동 등에 따라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</p> <p>5)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·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</p> <p>(4) 작동</p>
<p>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</p>		

2. 변경일: 2021년 05월 08일(토)

3. 시행일: 2021년 05월 10일(월)